

학 생 생 활 규 정

제 1 장 총 칙

1997.03.01. 제정
2012.09.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5.11.11. 개정
2026.08.24. 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학생회 회칙

제3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제4장 학생교내·외 생활규정

제5장 학생복장 및 용의규정

제6장 학생선도규정

제7장 생활교육 및 생활평점제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영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①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학년부장대표 1인, 교사대표 1인, 학생기획, 학부대표 1인, 학생대표 2인(9명)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2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정수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8. 3. 01. 회칙 수정)

제3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3. 3. 01. 회칙 수정)

제4조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 3. 01. 회칙 수정)

제5조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 10. 31. 회칙 수정)

제6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2007.12.05. 회칙 수정)

제7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2009. 5. 28. 회칙 수정)

영 진 고 등 학 교

학 생 생 활 규 정

제8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0. 3. 22 회칙 수정)
 제9조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 2. 9. 회칙 수정)
 제10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 8. 1. 회칙 수정)
 제11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2. 9. 1. 회칙 수정)
 제12조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5. 4. 1. 회칙 수정)
 제13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2020. 11. 2. 회칙 수정)
 제14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2021. 11. 29. 회칙 수정)
 제15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2025. 11. 11. 회칙 수정)
 제16조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6. 8. 24. 회칙 수정)

제 2 장 학생회 회칙

1997.03.01. 제정
 2015.04.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5.11.11. 개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며, 학교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동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제2조 【명칭】 이회는 영진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이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구】 이회의 건전한 운영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① 이회의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회 활동 : 협의 활동, 위원 활동, 자치 활동
2. 의식 행사 활동
3. 학예 행사 활동
4. 보건·체육 행사 활동
5. 현장 학습 활동
6. 각종의 봉사 활동
7.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② 이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교육 소위원회는 이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력정지】 이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시에는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제 2 절 임 원

제8조 【임원】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생회장 1인(3학년)
2. 학생부회장 3인(각 학년별 1명)
3. 각 부의 부장(3학년) 및 차장(2학년) 각 1인
4. 각 학급 실장, 부실장

제9조 【부서】 이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연간 계획 수립·추진,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건전한 교풍 확립,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3.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불우 이웃돕기, 생활 개선 활동, 환경 보전 및 근검절약 운동
5.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며,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1조 【임원 선출】 ① 회장, 부회장(2,3학년)은 1, 2학년 전체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학년 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단, 학생회장과 선임 부회장 임후보자는 러닝 메이트(Running Mate)제로 하며, 임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간선한다.)

③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회장(단)이 구성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이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에 한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격상실】 학생회장·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 각 학급의 실·부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승인
2. 유급이나 학생생활교육 규정(제6장 선도규정 제8조에 따른 교내봉사활동교육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1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6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대 의 원 회

제17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차장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전 심의, 의결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전 심의, 의결

제19조 【회의】 대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전에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승인】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절 학 급 활 동

제21조 【구성】 학급자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각 학급의 재적 학생으로 하며 학급실장이 의장, 부실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② 학급자치회의 부서는 총무부, 학예체육부, 바른생활봉사부로 하며 각부별 부장과 차장, 서기는 학급 담임이 임명한다.
- ③ 학생회장·부회장은 학급실장·부실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22조 【임무】 학급자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 안전 실천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전 의결
2. 학급을 위한 제반 사무의 의결 및 실천

제23조 【회의】 학급자치회의 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① 정기회는 매주 학급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반장 또는 담임교사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③ 학급자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절 생 활 교 육 소 위 원 회

제24조 【구성】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1·2·3학년부장, 학생기획, 1·2·3학년 생활교육계,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다.

1. 학생회의 교육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 항의 교육은 사전 사후의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부 칙 (2011.08.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2.09.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5.04.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0.11.0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학생회정·부회장선거 규정

1997.03.01. 제정
2015.04.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5.1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 절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진고등학교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실장, 부실장)의 선출은 본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교육하에 선출한다.
- 제3조 【정원】** 본교 학생회 회장단의 정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각 학년별 1명)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과 3학년 부회장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차 학년도에 3학년이 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출하고, 2학년 부회장은 차 학년도에 2학년이 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출하며, 1학년 부회장은 당해 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제 2 절 선거관리 위원회

- 제4조 【조직】**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담임이 지명하는 5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실 · 부실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중에 학교장이 지명하는 5명의 학생으로 구성하고 학생부장이 교육위원이 되며 필요시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③ 각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명을 둔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5조 【자격】** 각 선거관리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성실한 자
 2.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제6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등록 접수
 2. 선거일과 투표 장소의 결정
 3. 선거인 명부 작성
 4. 투표용지의 준비
 5.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6.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관한 일
 7. 투표 및 개표의 진행

8. 선거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처리
9. 당선자 확정 공고
10.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11.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사항과 기타 부수 사항

제 3 절 선 거

제7조 【후보자의 자격】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력이 있는 자로서 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선거일】 각 학급 실장, 부실장 및 학생회장단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학급 1학기 개학 후 14일 이내
- ② 학생 회장 및 2·3학년 부회장 선거는 전 학년도 11월 말 ~ 12월 말에 실시한다.
- ③ 1학년 부회장 선거는 당해 학년도 대의원 구성 직후 간접 선거로 실시한다.

제9조 【선거권】 ① 학생회장 및 2학년 부회장 선거는 선거 공고일 현재 당해 학년도 1·2학년 학생이 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정계를 받아 집행 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 ② 1학년 부회장 선거는 당해 학년도 3월 현재 대의원 학생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학생회장부 선거에 입후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학급 실·부실장은 해당 학급 학생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완료 당일에 입후보자를 모아 기호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 ③ 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별도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별지 1)
 2. 추천서(선거권자 5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단, 1학년 부회장 후보는 1학년 선거권자 3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별지 5)
 3. 서약서 1통(※ 별지 2)
 4. 소견서(7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11조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자의 공고는 선거일 직전 3일간 학교 내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12조 【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별도 서식과 같이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 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 일자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5조 【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①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호를 배정받은 익일부터 투표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교 밖에서의 선거운동이나 활동
 2. 강의실·도서관 등 실내에서의 선거운동
 3. 선관위가 인정하는 유인물·포스터 이외의 대자보·선전물제작·배포·부착행위

4. 학생기·메가폰·북·팽파리 등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
- ② 번호판, 어깨띠 등 인체 부착 선전물은 사용할 수 있다.
- ③ 소견 발표회는 합동으로 선거 당일 날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기호 순으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제16조 【자격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3.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4. 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5.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1차 경고를 받고도 불응한 경우

제17조 【투표】 투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 ② 투표는 합동 소견 발표 직후에 실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④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⑥ 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있는 기표란에 “○” 표로 한다.
- ⑦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18조 【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전에 각 후보자 참관인과 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의 임회 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후에 개표한다.

- ②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 개표도 전자투표의 집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3.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인지를 알 수 없는 것
4. 정·부회장 각 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21조 【당선인】 정·부회장은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각각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는 투표권자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22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하여 이를 생활교육소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당선인을 확정 공고한다.

제23조 【당선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거에 부정이 있을 때
2. 질병 및 학적변동이 있을 때

제24조 【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자끼리 결승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② 당선인이 없을 때

제 4 장 학생교내의 생활규정

-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④ 당선인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 단,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25조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시는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 개정한다.

1997.03.01. 제정
2015.04.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3.11.01. 개정
2026.08.24. 개정

부 칙
제1조 학급 반장, 부반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학급 담임이 반장, 부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02.)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9.)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1.)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11.)
제1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절 교 내 생 활

제1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항상 정숙한 태도로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교내생활을 통하여 협동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찰, 배치 패용】 등교 시 교문에서부터 하교 시까지 명찰, 배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이용 및 환경】 교실내외는 항상 깨끗이 하고 교구를 애용하며 환경미화에 힘써야 한다.

제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겨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5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6조 【여가선용】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7조 【복도통행】 복도통행은 조용히 우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실내외화 구분】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거나 실내화로 실외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게시물】 교내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광고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다.

제10조 【보건실 이용】 교내에서 병이 났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보건교사의 지시를 받아 보건실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교내활동】 방과 후 특별히 교실이나 시설 및 교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얻고자 할 때

제12조 【품위유지】 일신상의 문제는 대소를 막론하고 상담을 통하여 학생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매점이용】 교내 매점은 소정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고 질서를 지키며 음식물은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 먹도록 한다.

제14조 【조퇴, 외출】 학생은 등교 후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출,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보고 후 외출, 조퇴증을 발급받아 외출, 조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혐오 표현의 금지】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 조건, 성적 지향, 외모 등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을 차별,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학생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해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적대감을 선동하는 표현(이하 ‘혐오 표현’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금지되는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적 행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는 유행어, 신조어, 멸칭을 사용하는 행위 (예: 특정 지역·성별·장애인 비하 언어 등)
 2. 시각적 행위: 혐오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 포즈, 표식, 상징물을 고의로 노출하거나 낙서, 대자보 등으로 게시하는 행위
 3. 온라인 행위: SNS(인스타그램, 단톡방, 디스코드 등), 학교 홈페이지,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오픈채팅방 등)에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인 합성 사진·영상을 게재, 공유, 유포하는 행위
 4. 기타 행위: 놀이 문화를 빙자한 반사회적 조롱, 및 각종 혐오 표현을 공유하는 행위

제 2 절 교 외 생 활

제16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쓴다.
- ② 본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신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우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교육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17조 【대의 출전】 각종 경기, 시험, 발표회, 기타 모임에 참가하거나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기타】 학생은 교외에서 항상 정숙한 마음으로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학생의 긍지를 잊지 않고 민주적인 사회생활을 하여야 한다.

- ① 학생 출입금지지역이나 통제지역의 출입을 금한다.
- ② 음무 없이 외출하지 않으며 외출 시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림을 생활화 한다.
- ③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사에 조력하며 학업과 수양에 힘쓰도록 한다.
- ④ 보행 시에는 교통도덕을 준수하며 차내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제 3 절 정 보 통 신

제1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등)

- ① 학생은 수업시간을 포함한 일과 중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담임교사가 정당한 사유로 허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일과시간 동안 담임교사 주관으로 소지 중인 모든 스마트기기를 회수하여 일괄 보관하며, 일과 종료 후 불출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및 일과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벌점 및 주의를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5~7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사용·소지를 제한한다.
- ⑤ 일과시간 이후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일과시간 이후 자습 시간에 수업 관련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2. 일과시간 이후 사용 시 동영상 강의 외(게임, 채팅, 불필요한 검색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부여 및 당일 하교 때까지 압수한다.
 3. 강의 외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할 때(학습 목적에 한함), 먼저 사용 방법, 절차, 시간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직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03.01. 제정

2012.09.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5.11.11. 개정

2026.08.2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과 용의를 하며 검소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지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도】 다음과 같은 두발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염색, 파마, 착유 행위
2. 모발용 고착제(무스, 스프레이, 헤어젤 등)의 사용
3. 수염, 구레나룻을 기르는 행위
4. 문신 및 피어싱 등을 하는 행위

제3조 【교복】 교복의 복지, 복색은 【표】와 같다.

제4조 【복장 및 용의】 ① 학생은 등·하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복장 및 용의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특히 오손되었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옷차림을해서는 안 된다.

③ 교복의 형태를 변형할 수 없으며, 바지의 폭은 7~8인치로 한다.

④ 체육복 착용은 체육, 기타 시간의 교육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 【배지 및 명찰】 학교 배지는 왼쪽 칼라 가장자리에 부착하고, 명찰은 상의 왼쪽 주머니 상단에 패용 한다.

제6조 【신발 및 양말】 ①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신분에 적합한 구두는 허용한다.

② 반드시 양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7조 【가방】 책가방은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지 및 착용 제한 물품】

① 학생은 안전한 교육 활동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내에 반입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건
2. 인화성 물질,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불법 도박 관련 물품
3. 음란물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

② 가발, 모자,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는 원칙적으로 착용을 자제하되, 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통상적인 수준의 착용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사가 착용 제한 또는 일시 수거 등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한다.

1. 체육 활동, 실험·실습, 축제 등 신체 및 교육 활동 중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날카롭거나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 무겁거나 각진 반지 등)
2. 고가의 보석류나 지나치게 화려하여 중대한 이질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
3. 장신구 착용 및 관리 행위가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업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

제9조 【개인 물품 및 소지품 관리】

- ① 학생 개인의 물품 및 소지품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인의 물품 및 소지품은 본인 책임 하에 관리 및 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동 수업 시 휴대가 곤란한 현금이나 분실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은 담임교사에게 보관할 수 있다.
 3. 개인이 관리하는 사물함은 개인 책임 하에 항상 잠금장치를 하도록 한다.
 4.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사고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수업 및 교내 활동, 단체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중 학생 개인의 일탈 행위, 학생의 안전을 위협,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나 학생 생활교육 등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개인 소지품(가방, 옷, 휴대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지품 검사 시에도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실시한다.

제10조 【기타】 ① 사복 및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하지 못한다.

- ② 저속한 문구나 그림, 문자가 있는 T-셔츠는 입을 수 없다.
- ③ 단추를 채우지 않거나 신발 뒤꿈치를 접어 신는 행위는 금한다.

제11조 【예외】 이 규정 제4조 제1항은 학교장의 특별 지시가 있을 시는 신사복, 넥타이, 구두를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 이외의 기타 복장, 용의 문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6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직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7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9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10조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표】 교복의 복지, 복색

1. 동복 및 춘추복 모형도

구분	형 태	특징
상의		1. 디자인: 테일러드 카라 3버튼 싱글 자켓 2. 소재: 겹감 - 청회색 원단 안감 - 곤색, 흰색 3. 단추: 금속금색단추 20MM 3개, 15MM 8개
조끼		1. 디자인: 브이넥 앞판 케이블 니트 조끼 2. 소재: 흰색 바탕, 연회색/진회색 배색 (모: 50%, 아크릴: 50%)
하의		1. 디자인: 일반형 바지 2. 색상 : 곤색 원단 3. 혼용률 : 폴리에스테르63% 레이온34% 폴리우레탄3%
와이 셔츠		1. 디자인: 각카라 흰색 셔츠 - 단자 곤색 배색 2. 소재: 흰색 TR 원단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3. 배색: 곤색 TR 원단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4. 부자재: 흰색 폴리단추 11MM 7개

2. 하복모형도

남 자 하 복 형 태		특 정
상 의		1. 디자인: 스포츠 스타일 생활복 2. 소재: 겹감 - 검정색 COO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3. 부자재: 검정색 폴리단추 11MM 3개
		1. 디자인: 일반형 반바지 2. 소재: 회색 폴리스판 원단 (폴리에스테르: 80~90%, 폴리우레탄: 10~20%)
		1. 디자인: 일반형 반바지 2. 소재: 회색 폴리스판 원단 (폴리에스테르: 80~90%, 폴리우레탄: 10~20%)

※ 착용감 향상 또는 신제품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제시할 수 있음.

제 6 장 학생선도규정

1997.03.01. 제정
 2011.12.01.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5.11.11. 개정
 2026.08.24. 개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 원칙】 ①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며,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④ 일관되고 엄정한 학교규정의 적용을 통한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 절 학생선도협의회

제3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이하 “선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도협의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기획, 생활교육담당 교사,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생활안전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교감은 선도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하고, 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관장한다.

④ 선도협의회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기능】 선도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사안 설명】 ① 선도협의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년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을 징계할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도 있다.

제 3 절 징 계

제6조 【장애학생 대상 징계 및 보호 원칙】

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인권 침해 사안은 관련 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엄중히 다루며, 징계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이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 진술 방어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및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행동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토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10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 1. 교육감이 설치 · 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가정학습(담임교사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이수)
 - 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⑤ 퇴학처분

제8조 【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2.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3. 교외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4. 무단 조퇴 및 외출이 잦은 학생(3회 이상)
- 5. 교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6. 벌점 누적 20점 이상의 학생
- 7. 교사의 훈육 및 훈계를 통해 불량한 생활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학생

제9조 【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8조의 각 호를 다시 위반한 학생
- 2. 제7조의 학교 내 봉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한 학생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지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
-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시험)를 거부한 학생
- 5. 연속 5일 이상 또는 누적 1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 6. 불법·폭력 조직(서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
- 7. 교외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8.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

제10조 【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 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9조의 각 호를 다시 위반한 학생
- 2. 제9조의 사회봉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수한 학생
- 3. 형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된 학생
- 4. 공공시설물, 학교의 기물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 절도한 학생
- 5. 사이버 공간(SNS, 익명 커뮤니티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한 학생
- 6.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행위
- 7. 교사의 인권 및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한(사이버 포함) 욕설,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8. 7호의 경우,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 결정(제 3절 제 11조, 제 12조에 상응하는 경우)에 따름.
- 9. 연속 10일 이상 또는 누적 2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제11조 【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10조의 각 호를 제차 위반한 학생
- 2. 제10조의 특별교육이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수한 학생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학생 분리 조치 등)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학사운영을 마비시킨 학생
- 4. 교직원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신고(아동학대 무고 등)를 하거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학생
- 5. 고의적인 방화, 흉기 소지 등 교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학생
- 6. 다수의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의 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한 학생
- 7. 학교 시설물(교무실, 행정실 포함 학교 내 제반 주요 시설)에 무단 침입한 학생

제12조 【퇴학 처분】 퇴학 처분은 학교의 규칙에 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에 처할 수 있다.

- 1. 제11조의 각 호를 제차 위반한 학생
- 2. 출석정지의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 3. 정기고사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훼손한 학생
- 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유해화학물질(환각물질) 및 불법 도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학교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학생
- 5.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 정상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6.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학사일정을 장기간 마비시킨 학생
- 7.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 및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학생을 학교에 남겨두었을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8. 무단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며, 학교의 복귀 명령 및 교육적 조치에 불응한 학생
- 9. 제7조의 모든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제13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징계 기간, 봉사 활동 일수(시수),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이수 시간 등은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나. 교원의 업무 보조
 - 다. 교재, 교구 정비
 - 라. 학교내의 Wee클래스 심리 치료 및 상담
 - 마.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 2.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나.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다.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 기관 등)
- 라.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 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
- 바.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출석정지
- 가. 출석 정지 처분은 1회에 1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요구에 의해 관련 학생을 징계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라. 출석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5. 퇴학 처분
- 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전학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전학 권고에 불응할 시는 즉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나.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퇴학 처분과 동시에 학생선도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탁 교육기관 및 대안 교육기관을 안내하거나 기타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징계 출석처리】**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징계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제4항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15조 【심의 절차】**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해당되는 징계 사항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 조사 내용을 근거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도협의회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 제16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 제17조 【징계 유보】**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야영활동 등) 및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석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제18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중인 학생이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만료 전이라도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책임 교육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당해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결과 처리】 학생의 징계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사실을 공고하고 관련문서는 기록 보관 한다.

제21조 【규정의 개정】 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7호~제9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본 규정의 개정시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후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을 확정하여 학교장 결재후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하고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장 생활교육 및 생활평점제

1997.03.01. 제정
2016.06.01. 개정
2018.07.16. 개정
2020.11.02. 개정
2021.11.29. 개정
2022.09.01. 개정
2023.11.01. 개정
2025.11.11. 개정
2026.08.24. 개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① 학생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생활 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②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량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 ③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2조 【생활교육의 방향】

- ①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②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③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④ 생활평점제에 바탕을 둔다.
- ⑤ 일관되고 엄정한 규정의 적용을 통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한다.

제 2 절 “생활평점제”

제3조 【목적】 체벌 대신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4조 【운영방침】

- ① 벌점은 벌점 규정에 따라 위반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계하여 학년 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며, 벌점이 있는 학생은 각종 표창 및 장학금 혜택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 ② 체벌 없는, 선도 위주의 생활교육을 통해 기본 생활습관의 형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폭력 및 중대한 비행 등에 대한 학생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③ 상·벌점제를 디지털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해당 학생(벌점 10점 이상)은 학부형에게 SMS 문자메시지로 벌점 누적 사실을 통보하여 학생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 ④ 상·벌점 부여는 전 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상·벌점 누적 기간은 상은 학기 단위, 벌점은 재적 1년 단위(한 학년) 단위로 한다.
- ⑤ 교사, 보호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학교생활 개선을 도모한다.
- ⑥ 상점 및 벌점 규정 이외의 사항은 상·벌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추진한다.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벌점 부과에 불응하고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은 선도협의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⑧ 월별로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두어 신뢰감 있게 운영한다.
- ⑨ 상·벌점 누적 기간은 상점은 학기 단위, 벌점 누적 기간은 재적 1년 단위(한 학년) 단위로 한다.
- ⑩ 선행을 하여 20점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각종 수상 대상자로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 ⑪ 학생의 포상과 징계 사항을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 ⑫ 생활안전부에서는 담당교육 교사를 선정하고, 담당 교사는 매일 1차레(월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⑬ 월말 통계를 내기 전이라도 벌점 기준에 의거, 초과 학생은 규정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다.

- ⑭ 선도절차를 위반하여 벌점 부여 시 상점에서 감할 수 있다.

제5조 【상점】

- 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학교장 표창을 한다.(20점 이상)
- ② 정해진 선행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처리한다.
- ③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점을 인정한다.

제6조 【벌점】

- ① 위반 학생을 적발하면 상·벌점제 규정 위반 항목을 학생에게 인지시키고, 벌점기록표를 학생부로 제출하거나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 ② 벌점 누계에 의한 교육 내용

단계	누계점수	담당	지도방법	비고
1단계	15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구두경고 및 생활안전부 상담 선도위원회 안내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상담교사와 연계지도 ●필요시 교장, 교감선 생님 면담
2단계	2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 상담 선도위원회 회부	
● 모든 사안에 벌점을 부과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학생을 지도한다. ● 단계별 지도는 징계의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학생의 잘못된 부분의 개 선과 선도의 방향으로 지도한다.				

- ③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④ 생활 지도 점수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제7조 【상점의 기준】

영역	항목	선행 내용	점수	비고
환경 미화 활동 (배려)	1	휴지 줍기, 시설물 관리 우수 등의 자발적 환경미화 행위	1	
	2	낙서 지우기(칠판, 벽 등 학교 시설물)	1	
	3	담당 구역 및 교실 청소 모범	1	
	4	학교 비품 절약 및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	1	
준법 신고 활동 (소통)	5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신고	1	
	6	분실물 습득 신고	1	
	7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훼손 신고	2	
	8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 신고	5	
수업 태도	9	학교 폭력, 금품 갈취 관련 신고	5	
	10	수업 중 능동적으로 발표를 잘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1	
	11	수업 준비 및 숙제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1	
	12	수업태도가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됨	1	
	13	수업시간에 급우들을 독려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생	1	
모범 및 선행 (봉사)	14	한 학기 자율학습 개근	5	
	15	담임교사나 교과 선생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1	
	16	단체 활동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1	
	17	인사예절과 바른 말, 용의복장이 모범	1	
	18	교외에서 선행, 모범을 하여 타인에게 알려짐	5	
기타	19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교사 확인)	2	
	20	학업 면에서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교사 확인)	2	
	21	거동 불편 학우 등하교 보조 (등하교시 각 1회 적용)	2	
	22	대외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임	5	
기타	23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제8조 【별점의 기준】

영역	번호	별점 내용	별점	비고
기본 예절	1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말다툼(언쟁)	2	
	2	욕설 및 상대 비방 언행	3	
	3	일반적인 폭행	20	경위서
	4	쌍방 폭행	10	경위서
	5	교사의 지시 불이행 (교사의 사적 심부름 제외)	5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거부하는 학생	10	경위서
	7	교사의 지도에 불순한 언행으로 교사의 명예 훼손	20	경위서
	8	반사회적 조롱 및 놀이를 병자한 각종 혐오 표현	10	경위서
용모 및 복장	9	복장관련 위반(교복, 명찰, 넥타이, 배지, 실내화 미비)	1	
	10	두발 불량	3	1일 1회
수업 태도	11	수업 태도 불량 (소란, 방해 및 수면 등)	2	
	12	일과 중 휴대폰 및 IT 기기 소지(휴대폰 미제출 포함)	2	
	13	일과 중 휴대폰 및 IT 기기 사용(휴대폰 미제출 포함)	5	
	1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경우	1	
	15	교과서 미 준비 및 과제 미 이행	1	
	16	부적절한 언행사용	10	경위서
출석 태도	17	등교시 지각	1	
	18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무단 외출	3	
	19	무단 결석(1일), 2일 이상 1일 추가 시 3점 가중	5	
	20	학교 시설에 낙서하는 행위	2	
기초생활 질서	21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1	
	22	교실 및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2	
	23	청소, 주변 활동 등 학생 의무 이행 태만	1	
	24	월장, 운동장 횡단	3	
	25	창문턱, 난간 등에 걸터앉는 행위	1	
	26	음란물 유포 및 소지(음란도서, 음란CD, 잡지 등)	5	
	27	게임기 및 만화책 반입	3	
	28	침,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1	
	29	흡연 및 음주 (담배 및 라이터 소지는 10점)	20	경위서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5	
	31	도서 반납 매 7일 연체 시	1	
	32	도서 무단 반출	5	
	33	다른 사람 물건 함부로 가져가기(체육복, 교복, 책 등...)	5	
	34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한 행위	5	변상 조치
	35	감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3	
	36	음식물을 교실로 가지고 오는 행위	2	
	37	학생 단체 활동에 불참	2	
	38	금품 갈취	20	경위서
	39	실내 공놀이	3	
	40	수업 이외의 일과 시간에 휴대폰 소지 또는 사용	2	
식당 질서	41	새치기 행위	3	
	42	식당에서 고성, 폭언 및 소란 행위	2	
	43	음식물로 장난하는 행위	2	
	44	지정 좌석제 위반	3	
	45	배식 시간 위반	1	
준법	46	학업 성적 평가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10	경위서
	47	교통안전 법규 위반(무단횡단,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3	
	48	등·하교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 이륜차 사용 및 소지, 또는 무면허 운전	10	경위서

제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별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0조 【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상담 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스마트기기 또는 부적합한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증제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다.
- ⑤ 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교실 뒤편, 스탠딩 책상 등)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학사조정실, 상담실, 학년연구실 등)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4.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에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5.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6.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7.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의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8.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학교의 장은 제6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된다.
10. 학생이 개별학생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1.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 가정학습 실시를 위한 보호자 인계 확인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1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3. 학교의 장은 제10호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 의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4.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 『(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1차시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며, 1차시 미달한 시간 10분 이하는 절사한다.
 - 나. 성찰문 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과제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한다.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소지품 검사 및 물품 분리 보관】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③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에 사전 허용되지 않은 스마트기기 또는 수업에 부적절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2.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잉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궁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담배(전자담배 및 흡연 연축 제품 포함), 주류, 마약류 일체
 -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3. 그 밖에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라. 교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에게 제17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⑦ 물품에 따른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및 분리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다음 표에 따른다.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5일(주말, 공휴일 제외)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과 관련한 기록·관리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함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
2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폐기		
3	그 밖에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5일(주말, 공휴일 제외)		
단,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문자메세지(SMS),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교내 학생생활 관련 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 제11조에 따른 상담, 제1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4 절 기 타

제17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의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

제18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8. 3. 01. 회칙 수정)

제3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3. 3. 01. 회칙 수정)

제4조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 3. 01. 회칙 수정)

제5조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6. 10. 31. 회칙 수정)

제6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2007.12.05. 회칙 수정)

제7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2009. 5. 28. 회칙 수정)

제8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0. 3. 22 회칙 수정)

제9조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 2. 9. 회칙 수정)

제10조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 5. 23. 회칙 수정)

제11조 이 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2018. 7. 16. 회칙 수정)

제12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2020. 9. 25. 회칙 수정)

제13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2021. 11. 29. 회칙 수정)

제14조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2. 9. 1. 회칙 수정)

제15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 11. 1. 회칙 수정)

제16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2025. 11. 11. 회칙 수정)

제17조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6. 8. 24. 회칙 수정)